

태안 근흥 정죽-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

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태안 근흥 정죽-두야 도로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2023년 09월 22일

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

1. 계획의 개요

- 가. 계 획 명 : 태안 근흥 정죽-두야 도로건설공사
- 나. 위 치 :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~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
- 다. 규 모 : 연장 14.28km, 폭 17.5m(왕복 4차로)
- 라. 시 행 자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

2. 공개기간, 방법 및 내용

- 가. 공개기간 : 2023년 09월 22일 ~ 2023년 10월 06일(15일)
- 나. 공개방법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(www.molit.go.kr/drocm)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- 다. 공개내용 :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(☎042-670-3516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태안 근흥 정죽-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 환경영향평가서

-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-

2023. 9



국 토 교 통 부
대전지방국토관리청

1. 계획의 개요

- 계 획 명 : 태안 근흥 정죽~두야 도로건설공사
- 위 치 :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~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
- 계 획 규 모 : L=14.28km, B=17.5m(왕복 4차로)
- 사 업 시 행 자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
- 협 의 기 관 : 금강유역환경청

2.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

-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(주민 등의 의견수렴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(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·공람 등), 제14조(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), 제15조(설명회의 개최)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(초안) 공람하고,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

가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공람

1) 공고일자

-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-157호(2023년 6월 29일)

2) 공개방법

- 중앙일간지 : 매일일보(2023년 6월 29일)
- 지방일간지 : 충남일보(2023년 6월 29일)
-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(www.molit.go.kr/drocm)
-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
3) 공람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 : 2023년 6월 29일 ~ 2023년 7월 28일
- 공람장소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, 태안군청 건설과, 태안군 근흥면사무소

4) 주민의견 제출

- 제출기한: 2023년 7월 29일 ~ 2023년 8월 4일(공람 완료 후 7일 이내)
- 제출방법: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

태안 근흥 정죽-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고·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고·공람을 실시하고, 동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9일

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

1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태안 근흥 정죽-두야 도로건설공사
- 위치 :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~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
- 사업규모 : 연장 14.28km, 폭 17.5m, 설계속도 70km/hr
- 계획수립기관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 (사업시행기관 : 충청남도)
- 협의기관 : 금강유역환경청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- 신문공고 : 2023년 6월 29일
- 공람기간 :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~ 7월 28일 금요일(토요일, 공휴일 제외, 22일)
- 공람장소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, 태안군청 건설과, 태안군 근흥면사무소

3. 주민설명회 개최

- 일시 및 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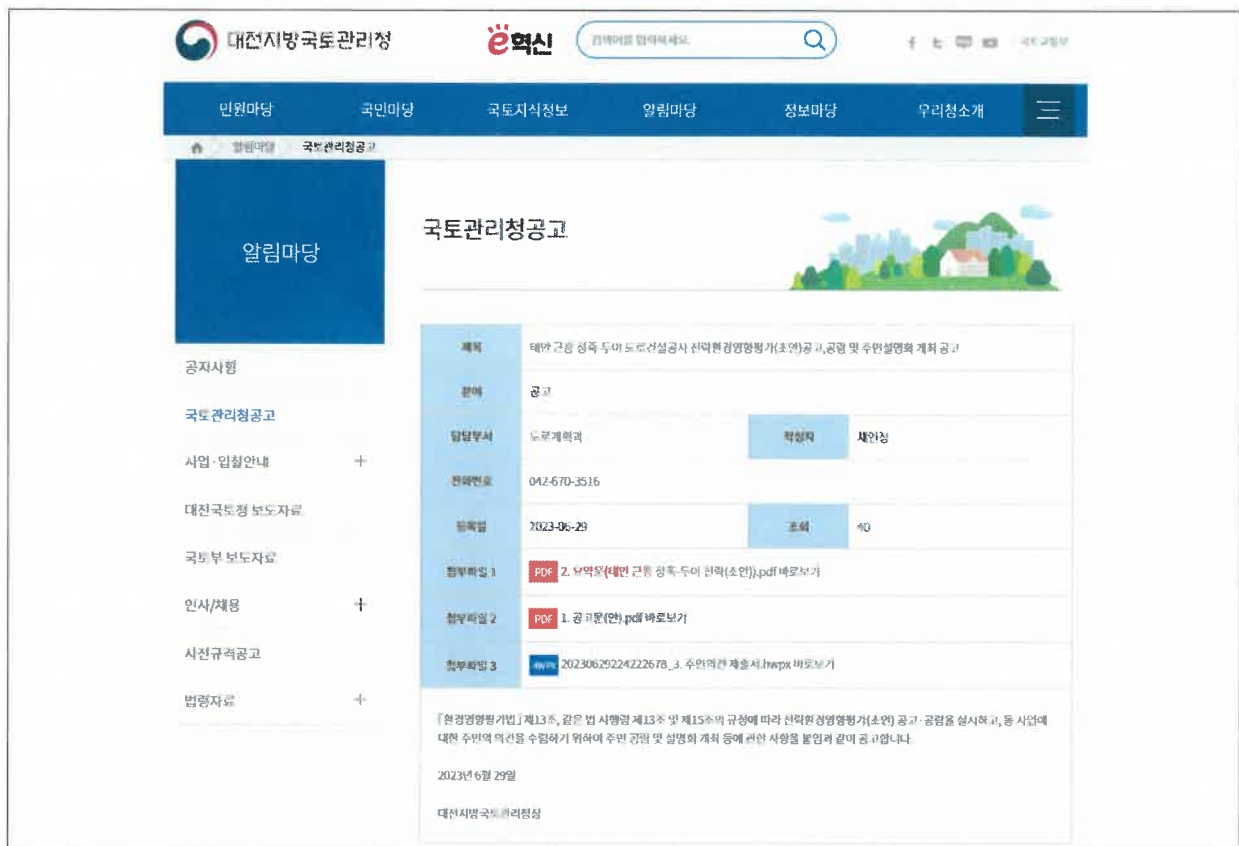
설명회 일시	설명회 장소	비 고
2023.07.19.(수) 14:00	근흥면 주민자치센터 2층 (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554-1)	

4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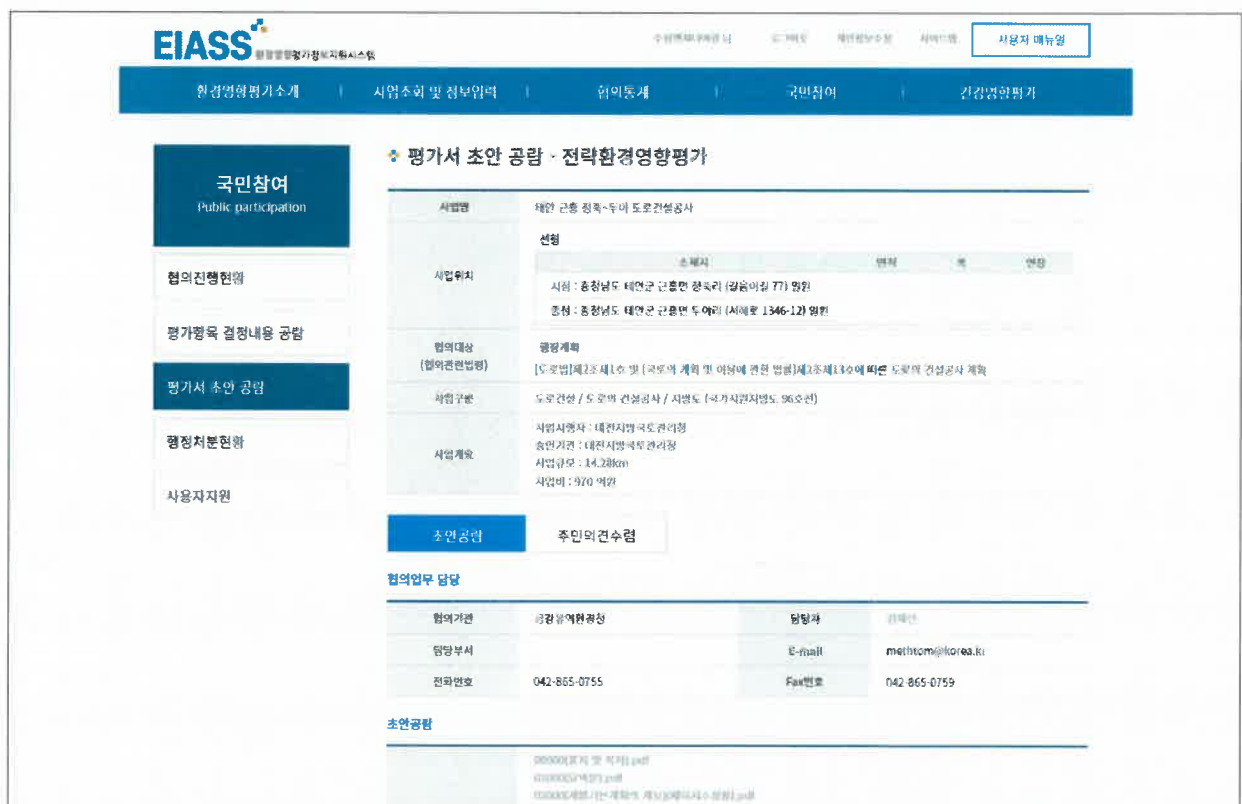
- 제출기간 :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
-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(도로계획과 채인정 주무관 ☎042-670-351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그림 1) 공고·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문



(그림 2)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(www.molit.go.kr/drocm)



(그림 3)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


두야교회교차로



안기삼거리



근흥면 하나로마트 앞



근흥면 주민자치센터



근흥면 정죽리 1346-6



근흥면 도황리 296-2



근흥면 정죽리 830-3



근흥면 정죽리 1322-1

(그림 6) 현수막 설치

나. 주민설명회 개최

1) 주민설명회 개최 개요

- 신문공고 : 초안공람에 포함하여 공고
- 일시 및 장소

설명회 일시	장소	비 고
2023.07.19.(수) 14:00	근흥면 주민자치센터 2층 (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554-1)	-

2)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

- 개최여부 : 정상개최
- 참석자(※참석자 명부 기준, 관계자 제외) : 총 59명



(그림 7) 주민설명회 개최사진

태안 근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설명회 참석명부			
사업명	태안 근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		
사업장위치	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일원		
사업시행자	대전지방국토관리청		
설명회장소	근흥면 주민자치센터 2층	일시	2023. 7. 19.(수) 14:00
일련 번호	성명	주 소	서명
1	김영		김영
2	김영		김영
3	김영		김영
4	김영		김영
5	김영		김영
6	김영		김영
7	김영		김영
8	김영		김영
9	김영		김영
10	김영		김영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

태안 근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설명회 참석명부			
사업명	태안 근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		
사업장위치	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일원		
사업시행자	대전지방국토관리청		
설명회장소	근흥면 주민자치센터 2층	일시	2023. 7. 19.(수) 14:00
일련 번호	성명	주 소	서명
1	김영		김영
2	김영		김영
3	김영		김영
4	김영		김영
5	김영		김영
6	김영		김영
7	김영		김영
8	김영		김영
9	김영		김영
10	김영		김영
11	김영		김영
12	김영		김영
13	김영		김영
14	김영		김영
15	김영		김영

태안 근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설명회 참석명부			
사업명	태안 근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		
사업장위치	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일원		
사업시행자	대전지방국토관리청		
설명회장소	근흥면 주민자치센터 2층	일시	2023. 7. 19.(수) 14:00
일련 번호	성명	주 소	서명
16	김영		김영
17	김영		김영
18	김영		김영
19	김영		김영
20	김영		김영
21	김영		김영
22	김영		김영
23	김영		김영
24	김영		김영
25	김영		김영
26	김영		김영
27	김영		김영
28	김영		김영
29	김영		김영
30	김영		김영

태안 근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설명회 참석명부			
사업명	태안 근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		
사업장위치	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일원		
사업시행자	대전지방국토관리청		
설명회장소	근흥면 주민자치센터 2층	일시	2023. 7. 19.(수) 14:00
일련 번호	성명	주 소	서명
1	김영		김영
2	김영		김영
3	김영		김영
4	김영		김영
5	김영		김영
6	김영		김영
7	김영		김영
8	김영		김영
9	김영		김영
10	김영		김영
11	김영		김영
12	김영		김영
13	김영		김영
14	김영		김영
15	김영		김영

(그림 8)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-1

태안 군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설명회 참석명부			
사업명	태안 군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		
사업장위치	충청남도 태안군 군흥면 일원		
사업시행자	대전지방국토관리청		
설명회장소	군흥면 주민자치센터 2층	일시	2023. 7. 19.(수) 14:00
일련 번호	성명	참석자 주소	서명
16			
17			
18			
19			
20			
21			
22			
23			
24			
25			
26			
27			
28			
29			
30			

태안 군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설명회 참석명부			
사업명	태안 군흥 정죽~두아 도로건설공사		
사업장위치	충청남도 태안군 군흥면 일원		
사업시행자	대전지방국토관리청		
설명회장소	군흥면 주민자치센터 2층	일시	2023. 7. 19.(수) 14:00
일련 번호	성명	참석자 주소	서명
31			
32			
33			
34			
35			
36			
37			
38			
39			
40			
41			
42			
43			
44			
45			

(그림 9)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-2

다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결과

- 주민의견 제출현황 : 총 4건
- 공청회 개최요건 해당하지 않음

구 분	주민의견 제출 현황(건)	
	의견제출서	공청회 요구
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	-	-
태안군청 건설과	-	-
태안군 군흥면사무소	4	2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)	-	-

3.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

가. 주민의견

구분	의견요지	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주민 설명회	주민1	○용신2교차로에 농협창고, 마을회관, 장로 교회, 가옥, 경로당 등이 편입되어 철거 되는가?	○현재 노선선정 중이며 교차로의 형식 및 규모는 노선선정 이후 결정할 예정임 ○경로당, 마을회관 등 용신2교차로의 주요 지장물 편입여부는 향후 노선선정 및 교차로 계획 후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됨	-
	주민2	○교차로의 범위가 어느정도 규모로 설계가 되었는가?	○본사업의 본선폭원은 17.5m이며 교차로 구간은 좌회전차로, 가감속차로 및 보도 등을 고려할 경우 최소 폭원으로 22.0m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	-
	주민3	○근흥장로교회 및 정죽2리 지역 등 주민 밀집지역에 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해야 함	○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운영에 따른 소음영향을 예측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계획을 수립 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임	-
	주민4	○갑작스러운 폭우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만조 시에는 서해로 접속되는 부분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이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설계 시에 반영되는가?	○본 사업노선은 지방하천 1개소와 소하천 4개소를 횡단하고 있으며 횡단구조물은 모두 교량으로 계획함 ○교량설계 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위 및 여유고 기준을 만족하고 조석현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종단계획을 수립할 계획임	-
	주민5	○설계 시에 마을 진출입로의 개수를 줄이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통로암거(굴다리)를 많이 만들어 마을간의 이동을 할 수 있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가?	○사업노선 주변 농기계 이동을 위한 통로 박스 설치 시 현재 도로를 6~7m 상향하여 하므로 도로 진출입이 어려워지며 도로주변 마을의 경관을 훼손하게 되므로 현재 도로중단을 최대한 준용할 예정임 ○농기계의 이동은 확장도로 주변 부체도로 및 농로를 이용하도록 계획할 예정이며, 통로암거 계획시 농기계 크기 등을 고려 하여 폭원과 높이를 적용할 계획임	-
	주민6	○토지보상 시 필지 전체가 아닌 일부가 편입될 경우에도 전체 필지에 대해서 매 입을 진행하는 것인가?	○세부설계 후 보상관련법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임	
	주민7	○계획노선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노선과 인접하여 위치한 가옥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는가?	○향후 세부설계 후 보상관련법에 따라 보상 절차 진행시 도로에서 인접된 가옥은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나, 환경적인 피해가 없도록 방음시설(필요시)을 계획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음	-

구분	의견요지	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주민 설명회	주민8	○ 계획노선을 정죽2리를 통과하지 않고 죽림지 방향으로 도로를 더 이격하여 정죽2리 마을의 가옥이 일체 들어가지 않도록 노선을 변경해 주기 바람	○ 정죽2리 통과구간인 죽림지(1+700)~지령산 입구(2+720) 지점은 죽림저수지, 저수지 보, 안흥초교 진입로, 금북정맥 보존 등을 고려하고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죽2리 마을의 가옥 저축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	-
	주민9	○ 현 도로에서는 도로가 분리되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소도로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4차선으로 확장되어도 기존의 소도로가 그대로 확보가 되는 것인가?	○ 왕복4차로 확장 시 대향 차량간 안전을 고려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에는 좌회전이 불가능함 ○ 단, U-Turn에 따른 우회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교차로를 계획하겠으며 마을진입로, 농경지 진출입로 등 기존 진출입로는 연결로, 부체도로 등을 이용하여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음	-
	주민10	○ 하천을 횡단하는 기존 교량의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수량이 적어 도로로 물이 범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계획노선에 따른 교량 설치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설계가 가능한가?	○ 본사업노선에는 지방하천 1개소와 소하천 4개소가 있으며 지방하천은 충청남도에서 소하천은 태안군에서 관리함 ○ 본설계 시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설계 시 하천기본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단을 계획하겠음	-
	주민11	○ 두야리에 지내시는 주민들이 두야장로 교회로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에서 연결되는 소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가?	○ 두야교회 교차로는 현 교차로형식(평면3지 교차로)을 유지하겠으며 4차로 확장으로 편입되는 진출입로는 연결로 및 부체도로를 이용하여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겠음	-
	주민12	○ 종점에서 두야장로교회까지 진출입로가 전혀 없는데 진입로가 계획되는 것인가?	○ 두야교회 교차로~종점구간은 수치지도(1:5,000도) 상 진출입로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계획에서 누락되었으나 현황측량 시 진출입로가 확인된 바 노선선정 이후 진출입로를 고려하여 교차로 및 연결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겠음	-
	주민13	○ 현재 7+200~300 지점에서 거주 중(낚시용품 판매)이며, 본인의 집 앞에서 도로가 아래쪽으로 설계되어 장사에 영향이 있는바 해당구간은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해 달라	○ 본 민원구간인 7+200~300 지점은 근흥면 소재지를 우회하기 위해 부득이 기존도로를 벗어나는 구간으로 마금리 진출입로와 연계된 용신1교차로 계획 시 근흥면 소재지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차로계획을 수립하겠음	-

구분	의견요지	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주민 공람	박○○	○근흥면민들은 도로확장 및 신설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,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건의나 질의할 사항을 몰라 근흥면사무소에서 와서 설명회를 부탁드립니다. - 여유있게 공청회 일자를 정하고 각 이장들을 통하여 통지하여 주십시오.	○7월 19일(수) 오후 2시에 근흥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-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청회 미실시	-
	장○○	○근흥면 용도로 517-6번지에서 사는곳과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 집이 모두 다 수용된다고 하시는데, 4차선 도로를 조금만 바꾸어서 설계해주셨으면 합니다. 다른곳은 집이 한 채도 안들어 간다는데 저희 집만 들어가네요. 저희 집을 수용되지 않게 조금만 변경해주세요	○민원필지(근흥면 용도로 517-6)는 근흥면 소재지 우회노선에 포함됨 지번임 근흥면소재지 우회노선은 근흥계이트볼장 저촉 및 농경지 양분화 배제, 농경지 저촉 최소화, 근흥면 소재지 우회거리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선형을 도출하였으며 부득이 일부 가옥 편입이 발생하였음	-
	최○○	○근흥-두야 4차선 도로건설 공사시 도로 양방향으로 수로설치 설계를 요구합니다. (도로위가 높고 도로 아래가 낮은 지형으로 폭우시 뚝동네 물이 내려오면서 도로에서 범람하고 있음)	○정죽~두야 도로건설사업은 현재(23년9월) 노선선정 중이며 노선선정 후 세부설계 시 배수계획을 추진할 예정임	-
	정죽2리 주민 일동	○저의 근흥면 정죽2리 주민은 두야~안흥 간 4차로 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정죽2리 마을을 관통하는 현재구간에 반대하며, 첨부된 도면상에 표시된 노선으로 변경 우회하여 주실 것으로 청원합니다. - 현재 계획된 노선은 저의 마을 정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마을주민 100여세대 300여 주민들의 통행에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한 마을의 분단을 고착화 시킬것이며 차량 및 각종 농기계의 통행에 큰불편을 줄 것이라 확신 하기에 저의 정죽2리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청원합니다.	○정죽2리 통과구간인 죽림지(1+700)~지령산 입구(2+720) 지점은 죽림저수지, 저수지 보, 안흥초교 진입로, 금북정맥 보존 등을 고려하고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죽2리 마을의 가옥 저촉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	-



나. 관계기관 의견

구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금강 유역 환경청	I. 총괄 ○본 계획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~두야리 일원 국지도 96호선 도로를 확장(2차선→4차선)하기 위한 계획으로 아래의 검토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함	○초안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하겠음	-
	II. 항목별 검토의견 <계획의 적정성> 가.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○환경보전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·검토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	○환경보전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·검토하고 본 보고서에 제시하겠음	-
	○도로 비교노선(안) 및 차로수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기존 도로의 현재 교통량, 향후 예상 교통량 등을 타당성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	○현황교통량 및 장래교통량(2030년_최대교통수요년도)을 제시하고, 장래 소요차로수(편도)를 적용하여 해당 구간의 용량 분석결과를 통해 적정 차로수 확보여부를 제시할 계획임	-
	<입지의 타당성> 가. 자연환경의 보전 1)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○계획노선 중 일부지역이 연안육역을 포함하고 있으며, 인접 해역에 어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영향평가 범위(평가서 32쪽)에 해역(반경 1km 이상)을 포함하여야 함 -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에 해양보호생물을 추가하고, 수환경 보전에 해양환경,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주변 해역의 어업권 등을 추가	○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항목에 해역을 포함하여 해양보호생물 항목을 추가하고, 수환경 보전에 해양환경,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주변 해역의 어업권 등을 추가 제시하겠음	-
	○대안별 훼손 정도 확인을 위해 생태·자연도 및 식생보전등급의 등급별 편입 비율 및 면적(규모)을 제시하여야 하며, 경사도가 있는 지역의 경우 경사도와 식생보전 등급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	○생태자연도 및 식생보전등급의 등급별 편입 비율 및 면적을 제시할 계획이며, 경사도가 있는 지역은 경사도와 식생보전 등급을 함께 제시하겠음	-

구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금강 유역 환경청	나.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○ 계획노선은 금북정맥 및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통과하므로, 통과구간에 대한 지형변화 상세 현황을 제시하고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○ 금북정맥 및 태안해안국립공원 통과구간은 기존도로를 활용한 확장으로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, 상세 현황을 제시할 계획임 ○ 또한, 최적노선 선정시 관련 기관과 추가 협의 하겠음	-
	○ 지형·지질 측면에서 노선별 입지 대안비교, 분석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의 세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	-	-
	- 주변 지형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안별 전체 노선도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, 횡단면도를 제시	- 대안별 전체 평면 및 종단면도, 대표횡단을 제시하겠음	
	-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대안별 사면의 위치, 연장,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형변화 현황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(절·성토량, 절·성토고, 절·성토비탈면고 등)	- 지형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대안별 지형 변화 현황(위치, 연장, 규모 등)을 제시하겠음	
	- 대안별 사업노선의 경사도·표고 등을 분석하여 제시. 끝.	- 대안별 계획노선의 경사도, 표고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겠음	
충청 남도	I. 총괄 ○ 본 사업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~두야리 일원의 도로를 확장(2→4차로)하는 도로건설 공사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본 초안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	○ 본 초안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	
	II. 세부 검토의견 1. 토지이용 분야 ○ 주거밀집지역(정죽2리 마을, 근흥면소재지) 통과구간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을 결정하여야 하며, 노선계획 시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- 부득이 지장물(가옥) 편입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전체 면적을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	○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후 최적노선을 결정할 계획이며, 노선 계획시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- 부득이 지장물(가옥) 편입시 세부설계 후 보상 관련법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임	

구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충청 남도	○법정도로, 농로, 마을안길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통로암거, 육교 및 부체도로 등을 설치하고, 주변 개발계획과 교통수요,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설치 시설물에 대해 충분한 폭원 및 높이를 적용하여야 함	○국지도96호선 확장으로 단절되는 관리도로, 마을안길, 농로는 진출입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로 및 부체도로를 계획하겠으며 통로암거 계획 시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폭원과 높이를 적용하겠음	
	○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주택·농경지(특용작물 등)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하여야 함 ○하천횡단 교량 설치 구간은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설계하되, 접속도로 종단 상향에 따른 민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하며, 구조물(교량) 설치 시 우회도로 또는 가설교량을 반영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	○기존 배수구조물 및 신설 배수구조물은 향상된 배수기준을 적용하여 용량검토 후 적정 배수구조물을 적용하겠으며 하천기본계획의 홍수위를 만족하지 못하는 기존교량(6개소)는 하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홍수위 및 여유고를 확보하겠음 ○또한 교량 신설에 따른 우회도로(가설교량) 계획 시에도 하천기본계획의 홍수위를 고려하겠음	
	2. 자연생태환경 분야 ○현지조사 시 농수로에서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가 확인되고 수달, 삵 등의 서식도 조사됨에 따라 공사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나 개체가 발견될 경우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함	○공사시 계획노선 내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또는 개체가 발견될 경우 해당구간의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임	
	○사업 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서식공간, 이동경로 등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 -계획노선 주변의 조사·분석된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로 현황에 따른 임야 단절구간 생태통로 설치, 로드킬 예방을 위한 유도울타리·측구탈출로 등 설치	○사업시행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동식물상에 대한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서식공간, 이동경로 등을 보전할 수 있을 방안을 강구·시행할 계획임 - 유도울타리, 측구탈출로 계획의 경우 실시설계(환경영향평가)시 제시할 계획임	
	○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 녹지를 단절하지 않고, 구역 내·외부의 녹지가 연결되도록 하며, 절개지는 사면녹화를 반영하여야 함	○주변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장,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절개지는 사면녹화를 반영하겠음	
	3. 대기 분야 ○공사 시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수립하여야 함	○세륜·측면살수시설 설치, 살수차 운영 등의 비산먼지발생 억제대책을 수립·제시하겠음	

구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충청 남도	○사업시행 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, 토사 이동·적치 등에 따른 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물질(PM-10, PM-2.5, NO₂) 발생이 예상됨 ○이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(주기적인 살수 및 방진덮개·방진망 설치 등)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, 공사시 세륜·측면살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함	○공사시 주기적인살수, 방진덮개·방진망·세륜·측면살수시설 설치 등의 저감대책시행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준수할 계획임	
	4. 소음·진동 분야 ○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소음·진동영향 예측 결과, 소음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저소음·저진동 장비 사용 등 저감대책을 마련하고, 주민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필요함	○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,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, 구체적인 제원은 실시설계(환경영향평가) 단계에서 제시할 계획임	
	5. 수질 분야 ○토공 공사에 따라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토사유실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, 농수로, 하천, 저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임	○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는 노선을 선정하는 단계로 배수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바, 향후 실시설계(환경영향평가)시 세부계획을 토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·제시할 계획임	
	○관로 매설 시에는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, 보행로 등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, 상·하수도관, 통신케이블, 송유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토양·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	○기존도로 및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확장,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향후 공사전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파손으로 인한 토양·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	
	○사업구역 내 지하수 관정(개발·이용 신고, 인허가된 관정 등)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 15조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 조치하여야 함	○본 계획으로 인해 철거되는 관정은 관련법에 따라 시·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임	

구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충청 남도	6. 기타 ○사업추진 시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(신고) 등의 인·허가 절차를 이행하고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골재 등의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건설공사(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이 9,000 제곱미터 이상) 등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	○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처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(신고)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, 순환골재 의무사용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순환골재를 사용할 계획임	
	○각종 폐기물의 배출, 수집·운반, 보관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	○각종 폐기물의 배출, 수집, 운반, 보관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적정관리할 계획임	
	○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과 갈등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	○사업시행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민원발생시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	
태안군	I. 총괄 〈환경산림과〉 ○본 협의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,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·감독하여야 함	○본 초안의견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모두 반영하고,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·감독할 계획임	
	○사업 시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	○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세부예측을 실시할 계획이며, 사업시행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등의 발생으로 추가적인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·시행할 계획임	
	○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함	○민원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할 계획임	

구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태안군	○협의한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 협의 등을 받아야 함	○협의한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임	
	○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활환경기준, 사람의 건강보호기준(환경정책기본법) 등 유지·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	○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지 세부예측을 실시할 계획이며, 대기, 소음진동 등의 기준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, 필요시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겠음	
	Ⅱ. 입지의 타당성 1. 생태자연도 ○개발로 인한 주변 농경지에 대한 피해 영향 예측 및 대책 수립이 필요	○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예측 및 필요시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겠음	
	○수산 동·식물상 및 사업지구 내 각종 야생 동·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	○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·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겠음	
	○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형 및 생태축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생태축 단절로 인한 야생동물의 로드킬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	○기존도로 및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확장,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유도울타리 등의 저감 대책은 실시설계(환경영향평가)시 제시하겠음	
	○개발사업으로 인한 절·성토로 인한 침식, 퇴적 등 환경영향 저감이 필요함	○사면녹화 실시, 표준경사 적용으로 절·성토에 의한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임	
	○사업지구 내 대부분이 생태자연도가 Ⅱ·Ⅲ 등급 지역이나 Ⅰ등급 지역이 포함될 경우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전방안 수립이 필요함.	○본 계획노선의 경우 생태자연도 Ⅱ·Ⅲ등급 지역으로 Ⅰ등급 지역은 없으며, 향후 포함될 경우 적정 보전방안을 수립하겠음	
	2. 환경영향평가법 ○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·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	○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의 경우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·시행과 분리하여 체결되었음	
	3. 물환경보전법 ○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마련 환경영향평가지 저영향개발(LID) 기법 적용 등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필요	○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는 노선을 선정하는 단계로 배수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바, 향후 실시설계(환경영향평가)시 세부계획을 토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·제시할 계획임	
	○우기철 공사(절·성토)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양식장 및 농경지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	○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침사지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할 계획임	

구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태안군	○본 사업지구 부지정지 시 필요량 만큼 적정 토공작업 계획을 수립 적치하여 토사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	○공사시 적정 토공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토사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임	
	4. 자연환경보전법 ○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단위사업 면적이 3만㎡ 이상일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사업승인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, 사업내용, 토지조서 등을 충남도지사(기후환경정책과)에게 통보하여야 함.	○본 계획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라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임	
	○법 제28조에 의거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하여야 함.	○자연경관영향협의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연계하여 심의토록 함	
	5. 대기환경보전법 ○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.	○착공 전 관련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진행할 계획임	
	○사업대상지 주변 사업 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,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-공사 시 예측소음도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(목표)초과 시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 시행 -공사장 및 작업장 주변 주기적인 살수 실시, 저소음·저진동 장비 사용, 작업시간 1일 3시간 이하 등	○세륜·측면살수시설 설치, 살수차 운영 등의 비산먼지발생 최소화 대책을 수립·제시함	
	6. 소음진동관리법 ○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	○공사시 소음·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, 구체적인 계획은 실시설계(환경영향평가)시 제시할 계획임	
	○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.	○착공 전 관련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진행할 계획임	
	○주변 주거시설 주변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저감대책(저소음·저진동 장비사용, 작업시간 조정 등) 수립 시행	○공사시 주변 주거시설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방음판넬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, 구체적인 계획은 실시설계(환경영향평가)시 제시할 계획임	
	7. 폐기물관리법 ○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폐기물 발생 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.	○관련법에 따라 공사시 5톤 이상 폐기물 발생 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진행할 계획임	

구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태안군	8. 석면안전관리법 ○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해체·제거 시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관련 규정 준수.	○관련법에 따라 지장물 철거시 석면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할 계획임	
	9.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○사업대상지 중 일부 지역이 야생생물보호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견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생태적 연결성 단절 및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, 생태통로 개설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	○현재 본 계획노선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포함 하지 않으나, 태안군에서 일부구간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○따라서, 생태적 연결성 단절 및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장, 신설계획을 수립하고, 향후 실시설계시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적정 저감대책(유도유타리 등)을 수립·제시할 계획임	
	10. 기타 ○기타 개별법에 의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	○기타 개별법 해당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계획임	
	〈환경산림과〉 1. 문화재 보호법 ○본 사업은 『문화재보호법』 제13조 및 제 35조에 따른 태안 안흥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로 문화재청 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→ 태안 안흥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에서 행해지는 사업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 추진 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하시기 바람 (보완) ※ 태안 안흥진성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도 참고	○본 사업은 부득이하게 「태안 안흥진성(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제560호)」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에서 일부 공사가 이루어 지므로 문화 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음	
	2.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○『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』 제6조 및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 해당(사업 면적 3만㎡이상) → 사업 추진 전 반드시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※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 여부 검토 가능 -매장문화재 미발견 시 공사 시행 가능하며 -매장문화재 유존 흔적 확인 시 표본조사, 시굴 조사 등 조사 필요	○본 사업과 관련된 문화재지표조사는 별도 발주 (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-92호, 2023.4.6.)되어 업체가 선정(23.4.14)되었으며 노선선정 후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겠음	